	가 정 통 신 문 **학교 내 일반 의약품 취급 안내** **(비의료인의 일반의약품 투약 금지)**	http://www.gaon21.ms.kr/
교훈 : 성실	경기도 시흥시 장현순환로 100, ☎ (교무실) 031-365-8200, ☎ (행정실) 031-365-8207	담당 : 예체건강부

학부모님께, 안녕하십니까?
항상 가정에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

2021년 개정된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라,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건교사만이 제한된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교직원이 교무실 등에서 학생에게 **일반의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**되어 있습니다. **파스 종류, 연고, 밴드**와 같은 **의약외품의 사용은 가능**합니다.

보건교사가 동행하지 않는 현장체험학습의 경우, 학생들은 **개인이 상비약을 지참**하여 필요 시 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. **진통제, 소화제, 알레르기 약 등** 본인에게 필요한 상비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협조해 주시고, 학생이 필요 시 스스로 복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사전 지도를 부탁드립니다.

의약품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가정에서 준비한 약품을 맡길 수 있으며, 이 경우 **학부모님의 사전 동의 및 확인 절차 후** 학생이 직접 복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.

정확한 투약 관리와 약물 오·남용 방지를 위한 지침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2025. 4. 23.

시흥가온중학교장[직인생략]